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3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2. 3. 2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되어 전자송달 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(안 제2조)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에 경감사항 직접 규정

나.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(안 제6조)

- (제1호)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개 신청: 150원 → 500원
- (제2호)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: 500원 → 1천원

※ 울산광역시 및 구·군 세액공제액 동일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
 -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5. 참고자료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12386호, 2022. 3. 17.)

라. 입법예고: 2022. 2. 28. ~ 3. 21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”를 “감면 및 특례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150원”을 “5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0원”을 “1천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”를 “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<u>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감면 및 특례</u> ----- ----- ----- .</p> |
| <p><u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</u>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 <p>1. 삭 제 2. 삭 제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| <p>제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1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</p> | <p>제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500원</u></p> <p>2. -----</p> |

1.·2. (생략)

제13조(감면신청 등)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·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감면기한의 특례)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감면신청 등) ① -----

----- 신청해야 -----.

② -----

-----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-----.

제14조(감면자료의 제출) 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제15조(감면기한의 특례) -----
----- 않은 -----

-----.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38조(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④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. <신설 2011. 12. 31., 2013. 1. 1., 2014. 1. 1., 2014. 12. 31., 2018. 12. 24., 2021. 12. 28.>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
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연간 비용 추계

| 세부내역 | 산출근거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계 | 2,500,000원 | |
|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개 신청 | 500원×1,000명=500,000원 | |
|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모두 신청 | 1,000원×2,000명=2,000,000원 | |

-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세무1과
- 직 급: 지방세무주사
- 성 명: 이 금복
- 연락처: (052)290-3371